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4 선고 2019가합518860 판결 [구상금, 손해행위취소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산

담당변호사 김기현, 성창재, 이진성

피 고 1. A

2.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남북

담당변호사 안왕선

변론 종결 2019. 9. 5.

판결 선고 2019. 10. 24.

주 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63,601,527원 및 그중 263,192,428원에 대하여 2019. 3. 8.부터 2019. 4. 8.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B과 피고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3. 체결된 매매계약을 279,989,9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279,989,9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A와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3.체결된 매매계약을 263,601,527원 및 그중 263,192,428원에 대하여 2019. 3.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피고 B은 원고에게 263,601,527원과 그중 263,192,428원에 대하여 2019. 3.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및 위 원리금 합계액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체결 및 연대보증

1) 원고는 2018. 7. 13.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와, C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 담보를 위하여 보증원금

263,500,000원, 보증기한 2019. 7. 12.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C의 대표이사인 피고 A는 C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위 신용보증약정은 원고가 C를 대신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C와 연대보증인인 피고 A가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 이행금액, ② 보증채무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2016. 2. 1. 이후 연 1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③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을 지급하도록 정하였다. 또한, 위 신용보증약정은 C의 파산절차 개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원고는 사전통지나 독촉 없이 사전구상할 수 있고, 이 경우 C와 연대보증인인 피고 A는 이의 없이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하기로 정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C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2018. 12. 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 개시를 신청함(서울회생법원 2018하합100488)으로써 위 대출금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당하는 신용보증사고를 야기하였다. 이후 C는 2019. 2. 15. 파산선고결정을 받았다.

2) 이에 따라 원고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인으로서 C를 대위하여 2019.3. 8. 중소기업은행에 C의 위 대출금의 원리금 합계 264,466,668원을 변제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1,274,240원을 회수하여 위 대위변제금의 잔액은 263,192,428원(=264,466,668원 - 1,274,240원)이 되었고, 확정손해금 349원[= 위 회수금 1,274,24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회수일까지(1일) 약정 지연손해금률(연 10%)에 따라 계산된 지연손해금, 원 미만은 버림]이 발생하였다. 또한, 원고는 위 대출금채권에 대한 구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법적절차(가압류 신청)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408,750원의 대지급금을 지출하였다.

다. 피고 A의 부동산 처분

1) 피고 A는 2018. 11. 3. 피고 B과, 피고 A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B에게 3억 7,000만 원(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시 지급, 잔금 3억 4,000만 원은

2018. 11. 19. 지급)에 매도하되,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근저당권자 D 주식회사, 채무자 피고 A,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은 잔금 지급 시 전액 상환하여 말소하고, 피고 A는 잔금 지급 후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4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아파트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후 피고 A는 2018. 11. 19.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피고 B과,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40만 원, 기간 2018. 11. 19.부터 2020. 11. 18.까지로 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아파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한편, 피고 A는 2018. 11. 19.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대출원리금 49,042,471원을 변제하고 2018. 11. 20.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라. 피고 A의 재산상태

피고 A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한 재산으로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4,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C의 원고에 대한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 게 위 대위변제금 잔액과 확정손해금 및 대지급금 합계 263,601,527원(= 263,192,428원 + 349원 + 408,750원) 및 그중 위 대위변제금 잔액인 263,192,428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9. 3.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 A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4. 8.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제2조 제2항에 따라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참조).

2)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A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8. 11. 3. 당시원고의 C 및 피고 A에 대한 사전구상금 채권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나, ① 이 사건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위 사전구상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② C는 2018. 12. 31. 파산절차 개시를 신청하여 2019.2. 15. 파산선고결정을 받을 정도로 당시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있어(피고 A도 C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사전구상금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③ 실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때부터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의 C 및 피고 A에 대한 사전구상금 채권이 성립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사전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참조). 그러나 그부동산의 매각 목적이 채무의 변제 또는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그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83992 판결 참조).

2)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피고 A의 사해의사 및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수익자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 대금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 C 직원들의 밀린 월급 및 퇴직금 지급, C의 대외채무 변제 등에 지출되었고, 피고 A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A는 원고에 대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 A가 2018. 11. 19.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 A의 주장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 대금이 C의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피고 A는 2019. 8. 19.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동일한 1억 8,000만 원을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A가 2018. 11. 19. 실제로 변제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49,042,471원에 불과하였음에 비추어 볼때,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의 실제 사용처에 대한 피고 A의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 A는 C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보증금 1억원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A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 B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체결된 것이고, 피고

A의 신용상태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참조).

3) 을 제2, 3, 5호증, 제14호증의 1, 2,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공인중개사 E의 중개를 통해 체결된 사실, 피고 A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잔금에 관한 영수증을 각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B은 피고 A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에 관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된다.

4)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 및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A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잔금에 관한 영수증을 각 작성하여 주기는 하였으나, 실제 피고 B이 피고 A에게 위계약금 및 잔금 합계 3억 7,000만 원(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1억 원을 제외할 경우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등의 자료가 없다. 심지어 피고들은 2019. 9. 2.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과 잔금 합계 3억 7,000만 원에 대하여 전부 현금을 주고받은 것처럼 영수증을 각 작성하였지만, 그중 1억 원은 실제로 현금으로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고까지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각 영수증의 기재와 같이 실제로 금전 거래가 있었는지도 매우 의심스럽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김제시에 있는 남편 소유의 토지를 처분하여 이 사건부동산을 매수할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위 토지 처분대금 등을 합하여 전부 현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B의 남편인 F가 김제시에 있는 토지를 매각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까지 지급받은 돈은 1억 3,000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매수자금은 여전히 그 출처를 확인할 수 없다. 또한 3억 7,000만 원이나 되는 매매대금을 전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점도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상당히 이례적이다. 더구나 피고 A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 대금으로 C 직원들의 밀린 월급 및 퇴직금 지급, C의 대외채무 변제 등에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회계처리내역 등의 자료가 없다.

②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함과 동시에 피고 A에게 다시 이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40만 원에 임대하였는데, 이후 피고 B이 피고 A로부터 위 차임을 매월 지급받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공인중개사 E의 중개를 통해 체결되기는 하였으나, 그 중개수수료가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③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인 2018. 11. 19.이 아닌 그 다음 날 말소되었는데,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이 사건 근저당권은 잔금 지급 시 전액 상환하여 말소하기로 하였다)이나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이례적이라고 보인다.

④ 피고 B은 자신의 딸과 그 가족이 1년 후에 중국에서 귀국하므로 그들이 살 곳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그들이 귀국할 때까지 1년 정도여유가 있어 피고 A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은 2018. 11. 19.부터 2020. 11. 18.까지 2년으로 피고 B의 위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⑤ 피고들이 제출한 2019. 9. 2.자 준비서면에서 피고 A는 공인중개사 E에게 '회사(C)가 어렵고 생활도 어려워서 하는 수 없이 아파트를 팔아야겠다'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 이유를 설명하였다고 인정하면서, 매수인인 피고 B에게는 위와 같은 매각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들이 제출한 2019. 9. 3.자 준비서면에서 피고 B은 '피고 A가 사업이 망하고 살던 집(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 어린 아들 3명을 데리고 살 곳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도한 이 사건 부동산에 다시 자신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을 보고, 너무나 자연스럽고, 동정심이 갈 정도였다'고 진술한다. 공인중개사 E도 진술서에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월 차임을 50만

원은 받으려고 하였는데, 피고 A의 사정이 딱하고, 피고 A가 집을 깨끗이 관리한 점 등을 감안하여 월 차임을 40만 원으로 양보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기재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 이유와 피고 A의 자력상태를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1) 관련 법리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참조). 한편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참조).

2) 원상회복의 방법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었는데, 피고 A가 2018. 11. 19.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대출원리금 49,042,471원을 전부 변제하고 2018. 11. 20.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사해행위 당시 공동담보가 되지 아니하였던 부분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3) 가액배상의 범위

사해행위의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액배상의 범위는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의 각 범위 내에서 그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및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 318,457,529원(= 이 사건 부동산의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 367,500,000원¹⁾ -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49,042,471원)

②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 279,989,930원(= 앞서 인정한 구상금채권액 263,601,527원 + 위 263,601,527원 중 대위변제금 잔액 263,192,428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16,388,403원²⁾). 한편 원고는 앞서 인정한 구상금 채권액 263,601,527원과 그중 대위변제금 잔액 263,192,428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그 합계액을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으로 보아 이를 한도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관련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가액배상에 있어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될 뿐이므로, 이를 초과하여 대위변제금 잔액 263,192,428원에 대한 사실심 변론종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에 포함하여 이를 한도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이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하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나 피고 B이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을 한도로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 B과 피고 A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3.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279,989,9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위 279,989,9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훈, 판사 김선아, 판사 박종웅

별지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오산시 G에 있는 H아파트 I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오산시 J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경사지붕 15층 공동주택(아파트)

1층 588.780㎡

2층 ~ 13층 각 559.660㎡

14층, 15층 각 425.450㎡

지2, 지1 각 108.170㎡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경기도 오산시 G 대 46,230㎡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5층 K호 철근콘크리트구조 101.85㎡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46,230분의 70.54. 끝.

1)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7. 8. 21.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3억 6,75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적어도 3억 6,750만 원일 것으로 추인된다.

2) 263,192,428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9. 3.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 A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4. 8.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제2조 제2항에 따라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15%,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9. 9. 5.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63,192,428원 × 0.1 × 32일/366일) + (263,192,428원 × 0.15 × 53일/366일) + (263,192,428원 × 0.12 × 97일/366일), 원 미만 버림, 이자기산일로부터 1년의 기간 내에 윤달(2020. 2. 29.)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1년을 366일로 계산함]